



 미국 법무부
 민권부서

 민권사무국

미국 교육부

2018년 12월 21일

동료 여러분께:

이 서신의 목적은 법무부와 교육부가 다음의 문서들에 반영되었던 방침 및 지침에 관한 성명을 철회함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 2014년 1월 8일자 학교 규율의 비차별적 관리에 관해 동료 여러분께 보낸 서신 (Dear Colleague Letter on Nondiscriminatory Administration of School Discipline); 그리고
- 2014년 1월 8일자 지원적인 학교 규율 발의안 개요 (Overview of the Supportive School Discipline Initiative).

또한, 교육부는 다음의 관련 문서들을 철회합니다:

- 2014년 1월 8일자*지도 원칙: 학교 풍토 및 규율 개선을 위한 자료 안내서* (Guiding Principles: A Resource Guide for Improving School Climate and Discipline);
- 2014년 1월 8일자 부록 1: 미국 교육부 연방 학교 풍토 및 규율 자료관련 디렉토리 (Appendix 1: U.S. Department of Education Directory of Federal School Climate and Discipline Resources);
- 2014년 1월 8일자 부록 2: 50개주, 워싱턴 D.C. 및 푸에르토리코 관련 학교 규율 법률 및 규칙 총간 (Appendix 2: Compendium of School Disciplin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50 States, Washington D.C., and Puerto Rico); 그리고

[OCR-000113-KO]

 2014년 1월 8일자 학교 규율 지침 모음 질의 답변 (School Discipline Guidance Package FAQs).

학교 규율의 비차별적 관리에 관한 동료 여러분께 보낸 서신 (이하 "지침") 은 1964년 민권법 타이틀 IV (타이틀 IV), 42 U.S.C. §§ 2000c et seq., 그리고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 (타이틀 VI), 42 U.S.C. §§ 2000d et seq., 그리고 시행 규정인 34 C.F.R. Part 100 에 준해 해당 부서들이 차별 불만을 분석하기위해 채택한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타이틀 IV은 특정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차별 불만 접수시에 공립 학교 교육위원회와 대학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타이틀 VI은 연방 재정 지원 수령자가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지침은 타이틀 IV와 VI 에 준해 학교 규율 적용과 관련된 다수의 사실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분석했으며, 각시나리오마다 해당 부서들이 도달할 수 있는 결론들을 제시하였습니다.

2018년 3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 안전에 관한 연방 위원회 (Federal Commission on School Safety) 의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원회에 지침 및 관련 문서들의 폐지여부를 포함하여, 몇 가지 쟁점들을 조사하고 권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18일, 이 위원회는 해당 부서들이 지침 및 관련 문서들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주 및 지역 학군들은 학생의 비행행동 및 규율의 특정 사례를 처리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교육 방침을 수립하는 일과 담임 교사들이 적절한 규율 방침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는데 주된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주 및 지역 학군들은 타이틀 VI을 포함한 연방법에 명시된 차별 금지 보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들은 지침 및 관련문서들이 타이틀 IV 또는 타이틀 VI에 의해 요구되거나 고려되지 않는 정책 선호 및 입장을 제기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침 및 관련 문서들을 철회하고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부서들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민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확고히 약속합니다. 인종, 피부색, 그리고 출신국에 의거한 차별에 대한 확고한 보호는 헌법, 타이틀 IV, 및 타이틀 VI에 의해서 보장되고, 변함없이 유지되며, 미국 내 교육 기관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중요합니다.

본 서한은 해당 법률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지 않으며, 민사 또는 형사사건에서 어떠한 당사자에 의해 법으로 집행될 수 있는 실질적인 또는 절차적인 권리를 창출하지 않고 UNDER REVIEW. This document and the underlying issues are under review by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s of July 30, 2021). Please note that this notation does not have the effect of rescinding this document or reinstating prior guidance.

의도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이 서한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원하시면, 교육부에 ocr@ed.gov 또는 800-421-3481번 (TDD: 800-877-8339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또는 법무부에 education@usdoj.gov 또는 877-292-3804번 (TTY: 800-514-0383번)으로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s/ 케네스 마커스 (Kenneth L. Marcus) 민권 담당 차관보 미국 교육부 /s/ 에릭 드라이밴드(Eric S. Dreiband) 법무장관 차관보 미국 법무부